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2. 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월 21일 이필레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1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01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16년 2월 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정행 의원

가. 제안이유

마포아트센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르신 건강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마포아트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 3)
 - 제13조의3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동 조례안 제13조의2(할인)제1항에서 마포아트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중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대상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안은 2016.1.25.~1.29.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고, 담당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마포아트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에는 동의하나, 다만 감면 할인에 따른 마포문화재단의 수익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르신 이용료 할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 어르신 이용료 할인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20%할인시	30%할인시	50%할인시
40,000천원	60,000천원	96,000천원

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계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타 자치단체 대관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마포문화재단의 대관료를 서울시내 유사시설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예산 보전 대책 :

① 제1안 : 어르신이용료 20%할인

아트홀맥·플레이맥 대관료 20%인상 ▶ 48,000천원 수입 보전

② 제2안 : 어르신이용료 30%할인

아트홀맥·플레이맥 대관료 25%인상 ▶ 60,000천원 수입 보전

○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각종 어르신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하나로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 시설의 종류 등) “별표1”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어르신 이용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총무아트홀 등 강습료(사용료)를 5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마포아트센터도 마포구민체육시설과 같이 공공시설인 만큼 어르신 이용요금을 동 조례에서 50% 이내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이번 조례제정은 최근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나, 마포문화재단은 자체 프로그램 수입과 구의 지원금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예산방식을 가지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으로 이용료 할인에 따른 재단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담당부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대관료 인상 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타 자치구 및 재단 대관료 등과 형평성 있는 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우리 구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대관료 인상률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대관료 인상(20%, 25%)시 재단수입은 당해연도(1차년도)는 증가하게 되나, 대관료 수입은 한번 정해지면 매년계속 인상할 수 없으므로 고정적인 수입인 반면에, 65세 이상 어르신 평균 증가율이 3% 인 점을 감안하면 할인에 따른 재단 손실액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다음연도인 2차년도부터는 계속 증가되는 어르신 평균 증가율 3% 인 상분 만큼 마포구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더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수정할 사항으로는 어르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동 조례안 제 13조의3(할인)제10호 조문 중 65세 이상 “노인”을 “어르신”으로 수정하고, 재단 프로그램 이용료 65세 이상 어르신 감면율(20%, 30%, 50%)에 따른 보 전대책으로 대관료(20%, 25% 등) 인상 시 동 조례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1항 관련 “별표(마포아트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 기준”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대관료 20% 인상 시

(별표) 1.시설사용료 나.개별기준
(1) 대공연장(아트홀 맥) 사용료

구 분	변경	클래식 국악	연극,무용, 재즈,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 (촬영)	행사
기본 대관료	현재	5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수정	600,000	960,000	1,200,000	1,440,000	1,680,000

(2) 소공연장(플레이 맥) 사용료

구 분	변경	클래식 국악	연극,무용, 재즈,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 (촬영)	행사
기본 대관료	현재	200,000	250,000	300,000	400,000	500,000
	수정	240,000	300,000	360,000	480,000	600,000

2. 대관료 25% 인상 시

(별표) 1.시설사용료 나.개별기준
(1) 대공연장(아트홀 맥) 사용료

구 분	변경	클래식 국악	연극,무용, 재즈,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 (촬영)	행사
기본 대관료	현재	5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수정	625,000	1,000,000	1,250,000	1,500,000	1,750,000

(2) 소공연장(플레이 맥) 사용료

구 분	변경	클래식 국악	연극,무용, 재즈,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 (촬영)	행사
기본 대관료	현재	<u>200,000</u>	<u>250,000</u>	<u>300,000</u>	<u>400,000</u>	<u>500,000</u>
	수정	<u>250,000</u>	<u>312,500</u>	<u>375,000</u>	<u>500,000</u>	<u>625,000</u>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